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7. 25 선고 2018나3187(본소), 2018나3194(반소) 판결 [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· 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

담당변호사 김남균

변론 종결 2019. 5. 30.

판결 선고 2019. 7. 25.

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9. 7. 선고 2017가단11326(본소), 2018가단1259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예비적 청구부분을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- 1)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서울 강서구 C 전 6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(ㄱ) 부분 13㎡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부분을 철거하고, 위 (ㄱ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- 2) 피고는 원고에게 2,954,000원과 2017. 4. 29.부터 위 (ㄱ)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05,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- 1) 주위적으로,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전 6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13㎡에 관하여 2008. 7. 1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) 예비적으로, 원고는 N 및 O에게 서울 강서구 C 전 6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13㎡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. 7. 1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 :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반소 :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수정하는 외에는

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(다만 "4. 결론" 부분은 제외)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4면 1항 및 2행의 "피고의 반소청구"를 "피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"로수정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5면 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
[다.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

I은 이 사건 토지 중 (ㄱ) 부분에 관하여 2008. 7. 11. 시효취득하였고, I이 2013. 7.20.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N, O(이하 'N 등'이라 한다)가 I을 상속하였는바, 원고는 I의 상속인인 N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(ㄱ) 부분에 관하여 2008. 7. 11.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피고는 I 및 상속인인 N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(ㄱ)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, 피고의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N 등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N 등에게 이 사건 토지중 (ㄱ) 부분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08. 7. 1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2)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, D 건물의 전 소유자인 I, N 등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(ㄱ)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(ㄱ)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,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, N 등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D 건물의 전 소유자인 I, N 등이 이 사건토지 중 (ㄱ)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넘게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.]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추가된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

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성철, 판사 김세현, 판사 지혜선